

##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00. 9. 1  
 개정 2005. 9. 1  
 개정 2008. 9. 1  
 개정 2010. 5. 17  
 개정 2012. 7. 1  
 개정 2018. 3. 1  
 개정 2018. 12. 24

**제1조(목적)** 우리대학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 ① 각종 시설물은 본교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수업, 실습 및 연구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부단체나 기관에서의 사용도 가능하나 교육목적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3조(범위)** 우리대학 시설물 중 사용가능한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 ① 체육관 및 강당
- ② 강의실과 각종 실습실 및 부대시설
- ③ 기숙사 및 식당
- ④ 운동장

**제4조(주관부서)** 시설물 사용에 관한 업무 중 우리대학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과정에 관련된 사용을 제외한 시설물 사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교육지원처에서 주관한다.

**제5조(신청 및 허가)** 학생, 교직원, 외부단체 등에서 학교주관의 정규교육과정상 사용되는 목적 이외로 우리대학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양식(별지 서식 제1호)에 의한 사용단체, 목적, 사용기간 및 내용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허가조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준수)** 우리대학 시설물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용 승인 목적이외의 사용금지
- ② 사용기간 및 시간준수
- ③ 안전 및 질서유지
- ④ 기타 우리대학에서 지시한 사항

**제8조(사용제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① 우리대학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적에 반하는 경우

- ②허가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 ③교육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 ④시설물 사용수칙을 위반하거나 고의,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 ⑤관리자의 정당한 통제 및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시설물 사용시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 설비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 사용자는 시설물의 사용 중 발생한 시설물의 훼손 또는 망실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①우리대학 주관에 의한 행사 사용과 시설물의 사용자가 우리대학 학생 또는 교직원으로 과정상의 필요에 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 이외의 사용이거나, 또는 외부단체 등에서 사용시에는 관리에 따른 소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는 시설물의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총장은 시설물 사용의 목적과 성격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부 칙

- ① 본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③ 본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④ 본 규정은 2010년 5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⑤ 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⑥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⑦ 본 규정은 2018년 1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제1호)

## 【 시설물 사용에 따른 요금표 】

2018년 12월 24일 현재

시설물명	사용구분	일반 사용시	냉난방 사용시	음향, 조명 사용 시
에듀플렉스	1일	500,000원	1,000,000원	150,000원
	4시간 이내	300,000원	600,000원	80,000원
기숙사	일 반	-	15,000원 (1박) 10,000원 (2박 이후)	-
	학 생 (초, 중, 고)	-	10,000원 (1박) 5,000원 (2박 이후)	-
컴퓨터실습실	1일	500,000원	600,000원	
	4시간 이내	300,000원	400,000원	
일반강의실	1일	100,000원	200,000원	
	4시간 이내	50,000원	100,000원	
현재관 강당 영상관 '봄' 청강홀 영상관 어울림관 영상강의실	1일	200,000원	400,000원	80,000원
	4시간 이내	100,000원	300,000원	50,000원
소극장 '숨'	1일	300,000원	600,000원	-
	4시간 이내	200,000원	400,000원	-
잔디운동장	축구경기	100,000원 (1시간) (최저 2시간 사용)	-	1일 80,000원
	행사	500,000원 (4시간 이내) 1,000,000원 (4시간~8시간)	-	4시간 이내 50,000원
청현재	안채	-	숙박 250,000원(1박) 비숙박 150,000원	-
	사랑채	-	숙박 250,000원(1박) 비숙박 150,000원	-

※ 사용구분

1. 기숙사 1일 숙박 기준(13:00 ~ 익일 11:00)  
- 사용료는 1박 1인 기준 금액임 / 침구류 세탁비 포함
2. 초과사용료 : 시설물 사용시간 초과 시, 초과된 시간만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함.
3. 청현재 1일 숙박 기준(13:00 ~ 익일 11:00)  
- 사용료는 1박 안채 5인, 사랑채 6인 기준임 / 숙박인원 초과시 1인 20,000원 추가(초등학생 이상)  
- 청현재 전체(안채, 사랑채) 대관시 2일부터 300,000원으로 할인 적용

(별지 서식 제1호)

## 시설물 사용 신청서

결	계	팀장	처장	총장
재			전결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학생-학번)		주 소	
사용 시설물				
기 간				
목 적				
내 용				
반입장비 내역				

신청인은 귀 대학의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상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드리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200 . . . . .

신청인 : (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귀하